직장어린이집 운영지침

제정 2018. 7. 19.

개정 2020. 3. 11.

개정 2021. 4. 30.

개정 2023. 4. 3.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된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시설명칭) 진흥원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「키사랑어린이집」(이하 "어린이집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- 제3조(운영방법) 어린이집은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위탁운영자"라 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며, 진흥원의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린이집 운영관련 지원업무를 담당한다.
- 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진흥원 실정 및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진흥원 어린이집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, 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 대표, 학부모 대표 등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각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필요시 위원장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 - 1. 어린이집 세부 운영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 - 2. 원아의 건강 · 영양 ·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
 - 3. 보육시간 ·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- 제5조(종사자 구성) 어린이집 종사자는 원장, 보육교사, 취사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다음과 같이 기타 인원을 둘 수 있다.
 - 1. 영양사
 - 2. 누리보조교사

- 3. 운영시간 연장 등에 따라 필요한 보조교사
- 4. 종사자의 휴가 등에 따라 필요한 대체인력
- 5. 영어, 체육, 음악 등 특별활동에 필요한 외부인력
- 6. 어린이집 위생과 청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
- 7.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력<신설 2020. 3. 11>
- **제6조(종사자 임면 및 관리)** ① 어린이집 종사자는 위탁운영자가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면, 관리하도록 한다.
 - ②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육교사 중에서 주임교사를 둘 수 있고 학부모, 학생, 지역사회 인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.
- 제7조(보육정원)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인가 정원으로 한다.
- 제8조(보육대상) 어린이집 보육대상은 진흥원 직원(이하 "직원"이라 한다)의 자녀로서 보건복지부의 「보육사업안내」기준 만 1세 ~ 만 5세 취학 전 자녀를 원칙으로 한다.
- **제9조(반편성)** ① 어린이집은 만 1세반, 만 2세반, 만 3~4세반, 만 5세반 등 4개 반을 편성·운영한다.
 - ② 각 반별 정원은 정부권장 기준에 따른다.
 - ③ 각 반에 편성할 보육대상 자녀의 연령기준은 보건복지부의 「보육사업안내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 -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령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필요시 반편성 및 각 반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운영시간) ① 어린이집 주 운영시간은 평일 08:00~20: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, 공휴일, 근로자의 날, 진홍원 창립기념일(7월 23일),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날은 휴원한다.
 - ② 시간연장 보육은 보육수요에 따라 실시한다.
 - ③ 어린이집의 소독 및 대청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3일 이내로 신학기 준비기간을 지정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제11조(입소절차) ① 입소대상자 정기모집은 매년 11월 중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한다.
 - ② 원아 모집기간에 직원이 자녀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입소대상자는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며, 어린이집 원장은 선정 결과와 입소에 필요한절차를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입소순위) ① 입소 신청인원이 보육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입소대상자를

선정한다.

- 1. 전년도 입소자(기존 원아)
- 2. 한부모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9조에서 정한 장애부모, 조손가족, 입양아, 보훈부모의 자녀 또는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- 3. 부모 모두 진흥원 재직자의 자녀
- 4. 맞벌이 부부의 자녀(배우자 재직증명서, 소득세 납세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)
- 5.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의 자녀
- 6. 1순위 ~ 5순위 이외의 직원 자녀
- ② 신청인원이 잔여정원을 초과한 입소순위의 경우에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입소대상자를 선정한다. 추첨 실시 후 합격자는 입소하고, 불합격된 자는 대기자로 등록하여 자격이 다음 해 신입 원아 지원 전까지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자녀가 재원 중인 직원이 재원 중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, 그 자녀는 당월 말까지 퇴소해야 한다. 다만, 재원하고 있는 원아의 반이 미달일 경우 퇴소 조치 없이 재원 가능하다. (차년도 원아 모집 시 전년도 입소자로 우대 없음)<개정 2021. 4. 30., 2023. 4. 3.>
- ④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입소하는 경우, 해당 육아휴직자는 그 자녀의 입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직하여야 한다.
- **제13조(퇴소)** ① 어린이집을 퇴소하고자 할 경우 퇴소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원아 또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집단보육에 지장을 주거나 타 원아에 대한 정신적·신체적 피해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은 보호자에 대해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육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제14조(보육프로그램 운영)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은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정한 표준보육과정을 포함하여 원아의 연령에 적합하도록 편성·운영한다.
- 제15조(건강 및 안전관리)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을 가정에서 검진기간에 따라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원장은 원아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야 한다.
 - ③ 원장은 원아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학부모에게 등원금지를 요구할 수있다.
 - ④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종합보험(원아상해보험, 교직원산재보험 등)에 가입하여야 한다.
 - ⑤ 원장은 종사자 및 원아에 대한 화재 및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영양관리) 급식 및 간식은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17조(보육기록 및 비치) 원아의 보육에 필요한 생활기록부, 출석부 및 보육일지, 시설운영일지, 일일 안전점검표, 일일 위생점검표 등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보육료) ① 보육료는 당해 연도 정부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한다.
 - ② 보육료 납부는 당해 연도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을 따른다.
 - ③ 보육료, 특별활동비, 현장학습비 이외의 잡부금은 수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납이불가피한 필요경비가 있을 경우 나주시가 정한 수익자부담금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할 수 있다.
 - ④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시에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의「보육사업안내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수납한다.
- 제19조(운영예산) ① 어린이집 예산은 진흥원보조금, 정부지원금, 학부모 부담금으로 편성된다.
 - ② 제1항의 진흥원 지원 금액은 매 회계연도 예산서에 따라 연간 소요예산을 매 분기 익월 초에 신청하고, 신청 후 10일 이내에 어린이집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.
- 제20조(예산・회계) ① 어린이집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- ② 어린이집 위탁업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어린이집의 예산안은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 - ④ 어린이집은 매 분기 및 매년 말 종료 후 결산을 실시하고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 어린이집의 예산·회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의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 회계 규칙」과 관련 회계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1조(관리·감독) ① 진흥원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관리·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, 필요 시 감사를 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, 진흥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에는 시정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2조(기타)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부 칙<2018. 07. 19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 03. 11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 4. 30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4. 3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